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위치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2026.7.1.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 및 관할구역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하향(8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30명(7급 3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0명)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	-----------	---

별표 1 제2호의 인천북부지청, 목포지청 및 여수지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북부지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검단구 및 강화군
--------	-------	----------------------------

목포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여수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별표 2 제1호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 광주고용센터 2. 광주광산고용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

별표 2 제2호의 목포지청 및 여수지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목포지청	1. 목포고용센터 2. 해남용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여수지청	1. 순천고용센터 2. 여수용센터 3. 광양용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별표 3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청
-----------	----------------------------

별표 11 중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79”를 “309”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602”를 “572”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3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30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0명)으로 본다.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432	101	331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431	100	33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70	34	13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120	15	10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18	1	17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7	2	5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8	1	7
행정전문관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u>2026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8년 6월 30일</u> -----. ②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은 <u>2026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 <u>2029년 8월 31일까지</u> ----- -.
고용노동부령 제4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 용하고 있는 별표 13의 정원 <u>4</u> <u>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3</u> <u>명)</u> 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3의 정원 <u>4명(행정서기 3</u> <u>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u> <u>명)</u> 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3 <u>명(행정주사보 3명)</u> ----- ----- ----- ----- -----3명(행정서기 2 <u>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 1</u> <u>명)</u>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279</u>	<u>309</u>	+30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602</u>	<u>572</u>	-30
•	•	•	
•	•	•	